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(안)

2021. 11.

과 학 기 술 정 보 통 신 부
(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)

1.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

신규인력 평가대상 재사정 결과를 반영하여 평가대상 정원을 삭제하는 내용으로 「우정사업본부 직제」가 개정(대통령령 제00000호, 2021. 00. 00. 공포·시행)됨에 따라 개정되는 사항을 반영하고자 하는 것임.

2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 략

나. 예산조치 : 2021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2021. 11. 29. ~ 12. 3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

우정사업본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8장(제26조)을 삭제한다.

별표 4를 삭제한다.

현행	개정안
제8장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	<u><삭 제></u>
제26조(평가대상 정원) 우정사업본부 소속기관에 두는 평가대상 정원의 구체적인 사항은 별표4와 같다.	<u><삭 제></u>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